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주요 내용

- 발언 1 :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보 긴급 청원 절차 및 근거 포함 긴급청원의 의미 -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

오늘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이용해 한국의 후퇴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이하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특정한 주제, 국가, 지역 인권 사안에 대해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고, 권고하는 독립된 인권전문기구입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특별절차는 45개의 주제별 임무(thematic mandates)와 14개의 국 가별 임무(country mandates)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되며, 대개 3년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무기한을 연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특별절차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별 인권침해 사건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관련 정부나 기업 등에 이에 대한 통보서 등을 발송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통보 또는 진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별절차의 진정제도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기하고, 가해국 등에 대해 침해를 예방하거나 중단하고, 진상조사나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진정이 제기된 사안과 그에 대한 정부 등의 답변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정서를 보낸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각 정부에 권고합니다. 현재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클레멍 불레(Clément Nyaletsossi VOULE) 로 2018년 4월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도 같이 진정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는 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자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고 소환장을 보내 수사하여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증진·보호하고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1월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차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관련한 권고가 주요 핵심 권고사항으로 채택이 되었고, 올해 10월 19-20일에 있을 5차 자유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한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로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권고를 내려주길 요청합니다. 정부 역시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의 모든 권리를 존중·보장하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하고, 규약상 권리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2 : 집시법령 개악 시도 등 정부 여당의 탄압 상황 -랑희 공감대 활동가

지난 5월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이후 한동훈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제가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다.” 그 '합법적인 한에서'가 문제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정부 여당, 그리고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합법의 테두리에 집회의 자유를 가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60년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진 현재 집시법은 사실 '집회 통제법'입니다. 이 집시법을 집회의 권리 보장법으로 바꿔가야할 때 더욱 나쁘게 개악하겠다는 정부 여당은 악법을 들이대면서 합법적인 한에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급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위치로 이전이 결정된 직후(2022.4)부터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와 행진을 모두 금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 집회 금지 현황을 보면 용산경찰서가 (4.41% (3,919건 신고 중 173건 금지)로 남대문경찰서 1.86%, 종로경찰서 1.69%, 서대문서 1.60%, 영등포경찰서 0.4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금지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실 인근 집회는 ‘신고→경찰의 금지 통고→경찰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법원의 인용 결정’이란 절차를 거친 뒤에야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매번 집행정지 결정을 했고 심지어 본안 사건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금지통고와 소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집회를 방해하고 시민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반복하는 법원에서 매번 금지통고가 효력을 잃게 되니 최근에는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로에 이태원로를 포함시키도록 집시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만드려고 합니다. 여당 국회의원은 집시법 11조 집회금지장소에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대통령 취임 1년 뒤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대통령이 2023년 5월 건설노조의 고 양회동 열사 추모 1박 2일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하자, 여당은 심야부터 아침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야간집회에 더해 출퇴근시간대 집회도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로 경찰은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에 대해 금지하니 집무실 앞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서 집회를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야간집회, 출퇴근 시간대를 금지하는 이유로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내세웠지만 실제 근거는 없습니다. 교통소통을 이유한 금지통고는 가장 비번하게 이용되는 금지조항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렇게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경찰의 집회 현장 통제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압훈련을 하고 6년 만에 캡사이신이 등장하고 살수차를 언급하는 등 이런 변화는 일선 경찰에게는 집회대응을 강도높게 하라는 메시지로, 시민들에게는 집회는 통제해야하는 어떤 위험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은 단지 집회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 각자의 삶과 사회,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것,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동료 시민의 삶을 함께 지킬 수 없다는 것 등 우리의 많은 권리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 (2020): 제21조(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다른 광범위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 온 귀중한 수단이다. 동 권리는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게 특히 중요하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존중 및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이다.“
그러니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라면 합법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를 모두 보장하겠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 발언 3 : 윤석열 정부의 집회 탄압 사례 -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1.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 사례

금속노조는 일시 2023. 2. 1.로 하는 집회와 행진을 신고한 바 있음. 집회 장소는 전쟁기념관 앞 도로, 행진은 그로부터 시청광장까지를 구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집회 신고를 부분금지 통고하였음.

그 이유인즉, (1) 전쟁기념관 앞은 집회 금지 구역을 정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해당하고, (2) 행진의 경우, 행진 경로인 이태원로는 집시법 제12조가 정한 ‘주요도로’들과 연결되어 심각한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지한다는 것이었음.

이에 민주노총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 3호에서 집회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집회 참가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31.자 2023아10255 결정>

최근 8월 17일에는 경찰의 위 처분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52871 판결>

법원은 (1)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관저”란 주거장소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해당 용어가 통상의 의미보다 확대되어 쓰였다고 보하더라도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장의 '공관'과 직무공간인 국회라는 직무공간 등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

(2) ‘이태원로’는 집시법 제12조가 규율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상 주요도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태원로'의 행진을 제12조를 근거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금지 처분을 취소함.

2. 삼각지역 이남 지역 집회 금지 사례

민주노총은 일시 2022. 9. 24., 장소 삼각지역 3번 출구~14번 출구, 진행방향 전차로로 하는 집회를 신고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삼각지 교차로 이북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함. 문제는 이북지역은 이미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수 차례하였던 장소였음. 대리인으로서는 당시 이남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는아직 선례가 없던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

이에 대해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 (1) 대안장소 역시 이 사건 집회장소와 마찬가지로 집시법상 주요도로로, (2) 최근에도 피신청인은 경찰은 대안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는 점과 함께, (3) 경찰에 문서화된 지침도 없는 등 대통령실 인근의 대규모 집회를 이 사건 대안장소로 장소적으로 제한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피신청인도 세운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함. <서울행정법원 2022. 9. 20.자 2022아12679 결정>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대규모 집회, 특히 당시까지 선례가 없었던 삼각지역 이남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막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대안장소를 행정지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정당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행정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임.

3. 퇴근시간을 이유로 한 일괄적인 제한 통고 사례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일괄적으로 17시부터 20시까지의 집회는 부분금지되고 있었음. 같은 맥락에서, 7월 4일 화요일, 7일 금요일, 11일, 14일에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 하고자 했던 집회 또한 퇴근시간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음.

그러나 집시법은 특정 저녁 시간대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의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요구하며, 확립된 판례에 의할 때는 제한이라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다음에야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퇴근시간은 참가자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금지할 사안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교통량 분산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참가자 수에 따른 퇴근시간대 집회가 가능하로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7. 4.자 2023아11958 결정 (이후 경찰은 항고하였으나 기각됨. 서울고등법원 2023. 7. 10.자 2023루1288 결정)>

4.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한**,**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

2023. 8. 21.자 구속영장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집시법상 확성기 중지명령 위반,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음.

그런데 문제되는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실무상으로도 낮은 형량을 예정하고 있음. 특히, 집시법위반의 경우 기소자의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고 있음. 대법원 사법연감 DB에 의할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집시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이 나온 건은 도합 2,952건인바, 그 중 실형이 나은 건은 14건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인 1793건에 대해서는 단순 재산형만이 선고되었음.

이는 집시법 위반만으로도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건이라고 보임.

5. 정리 발언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드립니다.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집회 시위는 타인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기본권의 형태로 실현되지만,

그 기본권은 집회 시위를 주최하는 단체에 귀속되는 자유가 아니라 참가자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회 시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은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이에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유엔에 조속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 발언 4 : 현장에서의 집회 탄압 : 평화로운 문화제, 추모제 강제 해산 등 실제 현장에서의 경찰 집회 탄압 - 명숙 인권운동 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함께 보고서 유엔 진정하는 데 함께 했고요 저희는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을 세 번 운영하며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 민변에서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이 꾸려져 함께 활동했습니다.

야간노숙집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드러나 인권침해를 세 측면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탄압은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집회 전부터 이루어지면, 집회당일에는 집회 장소에서, 집회 이후에는 수많은 소환장과 기소로 이루어집니다. 집회 전에는 집회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며 집회금지통보나 제한통보로, 당일에는 경찰력을 동원해 물리적 행사를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집회 후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아주 후퇴시키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직지법 상황에서도 보장된 것들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야간 노숙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헌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노숙 집회는 안 된다 출퇴근 집회는 안 된다고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듯이 사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장소와 시간, 내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3년에 와서 시간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에 야간 노숙 집회와 출퇴근 집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출퇴근 집회는 전장현이 지하철 출근 시위를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출퇴근 집회는 안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출퇴근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야간 노숙 집회는 멀리 지방에서 서울의 대기업이나 국가 권력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올라온 노동자들의 집회, 비정규직들의 집회에 대해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간 노숙 집회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두 번, 그리고 파이낸스 센터에는 청계광장에서 한 번 집회를 탄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7월 7일 야간 노숙 집회와 관련해서는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 통보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대규모 집회도 아니었고 소규모 집회였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 소규모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밤 11시까지 되고 그다음에 아침 7시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 통보도 터무니없기도 하거니와 왜냐하면 시내에서 인도에서 하는 집회 주택가도 아닌데 그것을 금지할 근거는 없지만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면서 민주노총은 퇴근 시간에도 못하게 했는데 여기는 11시까지 해준 거니 많이 봐준 거다라는 식으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발언을 경찰이 주최 측에 했습니다.

저희 인권침해 감시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11시가 되자 경찰은 바로 평화적인 집회, 심지어 해산 명령을 한 집회에서 그다음 날 아침에 집회 선전전을 하기위해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해산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날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회 시위의 권리는 행사를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폭력적인 강제 해산이 문제점이라면 세 번째는 집회 후에 이 소환장을 날리며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은 집회시위를 감시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니다.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이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했던 인권활동가들과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집회는 탄압받을 수 있다 집회 감시하는 사람도 경찰에 형사처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죠. 그럼으로써 집회, 시위 참여자들은 변호인도 감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집회 시위의 탄압을 봤는데 집회에 갈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겠죠. 이른바 위축 효과를 낳는 것이기에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인권기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 일반논평 37호 2020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보장, 집회 감시 활동에 대한 보장을 말한 바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2016년 평화적 집회시위의 특별보고관도 집회시위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을 하거나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인권기주는 물리적인 강제적인 해산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 기준입니다. 심지어 미신고 집회일지라도 폭력이 사용되지 않으면 평화적 집회라고 이미 유엔 평화적

집회의 권리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참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6명, 많게는 10명이 사지를 들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해 정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 참가자들에게 기소장을 날리고 있고 그 기소장을 날린 사람들이 지금 1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사람은 세 번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처음 받는 경우도 있지만 5월 25일, 6월 9일, 7월 7일 세 번에 걸친 집회, 야간 노숙 집회에 대한 탄압은 물리적 탄압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하는 그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

이렇게 국제사회의 기준, 국제인권 기준에 어긋나게 집회, 시위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민변 류다솔변호사님도 같이 했지만 전장연의 출근시위 탄압과 관련해서 유엔에 진정을 한 바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되게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권단체들에서는 한국이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8년 촛불 인권 침해 이후 그리고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이후 한국에는 집회 시위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인권침해 후퇴에 대해서 한국을 방한해서 조사하고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상황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한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인권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라고 권고할 때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최소한 집시법과 헌법의 결정은 따르십시오, 최소한 국제인권 기준은 못 지킨다면 판례라도 준수하십시오. 집회시위라는 헌법적 권리를 이렇게 불온시하고탄압합니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집회시위의 대한 탄압과 후퇴적 조치, 침해적 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5 : 국제규범 위반 -류다솔 민변 국제연대 변호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자유권규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세계2차대전 이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국제사회는 모든 사람의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장 근본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권리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0년 가입하여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즉 자유권규약 역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자 유엔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작년 윤석열 정권의 집권 이후 이러한 핵심적 인권의 요소인 집회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경찰과 대통령실 등은 대통령집무실이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과 교통불편 등을 내세우며 집회신고를 무분별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집회란 공공장소 등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일정 수준의 방해를 수반하는바 그러한 방해가 과도하게 불균형적이지 않은 한 이를 수용해야 하며 나아가 집회를 제한할 때에는 당사국이 그 모든 제한에 대해 상세하게 그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집회를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상업 활동을 하거나 차량 통행, 보행자 통행을 하는 것과 똑같이 합법적으로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것이며, 평화로운 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는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이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집회 개최가 언제는 가능하고 언제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시간이나 날짜 자체에 제한을 두면 자유권규약과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는 정부와 여당의 야간집회 금지 부활 시도 등의 문제점에 맞닿아있습니다.

나아가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국제인권법상 국가는 평화적 집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촉진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의 인기투표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라는 찬반투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을 다수결에 따라 가볍게 어기겠다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반국제인권법적인 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6년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을 공식방문하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법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성”을 따지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국내법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은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그 유효성은 입법부나 국가안보 기관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사회,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견해를 표현하는 정당한 수단이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축소가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정부당국의 국제적 의무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가치를 좇는다고 주창하는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고, 민주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가치로 규정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옥죄는 모든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